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비 규정

제정 2003. 05. 24
1차 개정: 2017. 05. 20 | 2차 개정:2018. 05. 19 | 3차 개정:2020. 09. 27 | 4차 개정:2023. 04. 2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비는 대한신장학회 자체 연구비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 축적 및 그 이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비라 한다.

제 3 조 (대상 과제)
대, 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라는 대명제 하에, 연구대상과제는 그룹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학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 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 축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한 신장센터를 반드시 포함한 2개 이상의 신장센터가 공모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센터 수가 늘어날수록 평가점수를 더 부여하도록 한다.
다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최소 단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2000 만원 이상 : 2기관, 3000 만원 이상 : 3기관, 5000 만원 이상 : 4기관 이상) 참여 기관이 많을 경우 최소 단위 이상의 다기관이 참석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비 금액 및 연구 수행기간))
연구비 금액 및 연구 기간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 1회 연구 과제 총 연구비는 연간 5천 만원 이내, 연구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제 2 장 후보자 자격과 조건

제 5 조 (지급 대상 자격)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본 학회 정회원 중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의 축적 및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연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연구비 지급 조건)
동일 연구 과제(혹은 같은 내용)로 타기관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은 과제, 학위 논문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비의 주 연구자로서 연구비 수혜는 일회로 제한한다. 그러나 공동 연구자로서 참여

는 제한하지 않는다.
본 연구비로 작성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후보자 선정

제 7 조 (연구 공모와 신청 기한,접수)
협동연구 공모는 매년 대한신장학회 연례학술대회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수개월 전에 실시하며, 연구계획서는 공고 후 대한신장학회 연례학술대회 초록마감일까지 대한신장학회 사무실로 제출한다. (부칙: 1회성 특별연구기금 및 일반 협연과제의 1회 공모 시기는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신청 절차)
연구비 신청을 위하여 대한신장학회에서 정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사 위원회 및 심사)
연구 계획서의 심사는 협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연구비 선정은 협연위원회 심사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동일 출신대학교 및 동일 근무지의 주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할 수 없다. 협동연구비의 심사는 대, 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라는 대명제하의 그룹 공모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대표성을 가진 최소 2개 이상의 신장센터가 참여하는 그룹
대한민국 신장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의 선택
타당성있는 연구 및 통계 방법 등을 중요시 하여 선택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위하여 가능한 대한민국의 전 지역의 신장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장학 분야의 기초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현 대한민국 행정 자치 구역인 서울특별시(반드시 포함),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반드시 포함),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주도(총 11단위)를 1단위로 하여 최소 2단위 이상이 참여하여야 되며 참여 단위가 늘어나거나 참여 신장센터 수가 늘어날수록 평가점수를 더 부여하도록 한다.

제 4 장 연구비 지급

제 10 조 (연구비 과제 결정)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1 조 (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대한신장학회 연례학술대회 정기 총회에서 당해연도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며, 연구 1년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술대회에서 연구 진행사항을 발표 하여야 하며, 이사장 주관하에 심사한 후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다. 연구가 계속 진행시는 매년 반복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대회에서 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회 공모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첫해의 연구비 지급 시기가 예외일 수 있다.)

제 5 장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제 12 조

연구 결과는 연구가 끝난 후 다음 해 대한신장학회 연례학술대회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에서 발표하고, 3년 이내에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KRCP) 원저로서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별책 파일을 대한신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와 연구비 수여 후 중도 탈락된 경우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연구비 및 학술상 수상에서 5년간 제외하며 최종결과물을 제출할 때까지 책임연구자는 향후 협동연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 개시 후 13개월째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대한신장학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여 협연이사에게 제출하고 이 후 매년 반복한다.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이 부정한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연구비 및 학술상 수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협동연구비 공고내용 중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가 따로 공지된 경우는 그 공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 13 조

게재 논문에는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혀야한다.

(사사문구)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cooperative research fund from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연도)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3년 4월 29일 대한신장학회 평의원회 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효한다.

(3) 향후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또는 전체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